

## 존속·비속 살인에 대한 세대별 살인사건 판단의 차이\*

신 호 영<sup>†</sup>

이 정 원<sup>‡</sup>

한림대학교

본 연구는 살인유형에 따라 참가자의 세대별 살인사건 판단 차이가 존재하는지 탐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실험 참가자들은 존속살해, 비속살해, 보통살인 중 무선할당된 한 가지 살인사건 시나리오를 읽은 뒤, 사건 판단(가해자에 대한 판단, 문화적 전통, 일탈 정도, 피해자 책임 판단)에 대해 응답하였고, 최종적으로 밀레니얼세대 67명, 기성세대 61명으로 총 128명의 응답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결과, 모든 종속변인에서 살인유형의 주효과와 살인유형과 세대 간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가해자에 대한 판단(예: 가해자 비난, 가해자 책임, 범죄의 고의성 등)에서 세대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밀레니얼세대가 기성세대보다 가해자에게 비우호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존속살해의 경우, 밀레니얼세대가 기성세대보다 가해자에게 비우호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성세대 참가자는 존속살해 가해자보다 보통살인 가해자에게 비우호적인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고려되고 있는 ‘존속인 피해자’ 요인에 대해 재고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존속살해, 비속살해, 보통살인, 유교적 전통, 세대별 판단

\* 본 연구는 신호영의 2021년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학사학위 논문을 재구성하여 작성되었음.

† 제 1저자: 신호영, 한림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석사과정

‡ 교신저자: 이정원,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및 한림응용심리연구소,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1

E-mail: [jwl@hallym.ac.kr](mailto:jwl@hallym.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 ©2022, The Korean Association of Psychology and Law

살인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 따라 보통살인, 존속살해, 비속살해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 존속살해와 비속살해는 존·비속 관계에서 발생하는 살인유형으로, 비속이 존속을 살해하는 범죄는 존속살해, 반대로 존속이 비속을 살해하는 범죄는 비속살해로 정의된다.

국내 문헌과 기관 통계를 살펴보면 존·비속살해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06년 1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총 7년 3개월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총 381건의 존속살해와 비속살해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존속살해의 연간 발생 건수는 2008년 42건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약 50~60건이 발생하였으며, 비속살해의 경우 2008년 26건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30~39건이 발생하였다(정성국, 이재란, 김진영, 탁기주, 오익준, 명의철, 2014). 특히, 2006년의 존속살해 발생 건수에 비해 그로부터 5년 뒤의 발생 건수는 약 6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철호, 2012). 이러한 존속살해 발생 건수의 증가는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의하면, 전체 살인사건의 발생비는 2011년부터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거나 존속살해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5% 선에서 2018년 8.4%, 2019년 7.7%, 2020년 7.5%를 기록하면서 그 비율이 부쩍 증가하였다. 이 수치는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치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존속살해가 전체 살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기준 1.2%였다(정한결, 2020).

#### 살인유형별 사건 특성

정성국 외(2014)의 2006년 1월부터 2013년 3

월까지 일어난 존·비속살해 사건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존속살해죄의 피해자인 부모의 성별은 여성이 54.1%로 남성보다 많았고, 가해자의 성별은 남성이 87.1%로 여성보다 많았다. 비속살해죄의 피해자인 자식의 성별은 남성이 50.9%로 여성보다 많았고, 가해자의 성별 또한 마찬가지로 남성이 51.0%로 여성보다 많았다. 홍영오, 김빛나, 손지선(2020)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발생한 전체 살인범죄의 피해자의 성별은 남성이 57.3%로 여성보다 많았고, 가해자의 성별 또한 남성이 81.1%로 여성보다 많았다.

정성국 외(2014)의 연구에 따르면, 존속살해 가해자에게 우울증 및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이 있는 사건은 39.6%였고, 비속살해 가해자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사건이 28.7%로 나타났다. 존속살해 동기는 가정불화가 49.3%로 가장 많았고, 정신질환 34.1%, 경제문제가 15.2%로 그 뒤를 이었다. 비속살해 동기도 다소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가정불화가 44.6%로 존속살해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경제문제가 27.0%, 정신질환 23.9% 순으로 많았다. 존속살해 동기에 대해서는 1986년부터 1994년까지 발생한 존속살해를 분석한 최인섭과 김지선(1995)의 연구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신이상과 피해자인 부모의 상습적인 폭행 혹은 모욕감을 주는 행위와 같은 학대는 8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루어진 홍영오 외(2020)의 연구 결과 또한 맥을 같이 한다. 피의자 특성 중 하나로 성장 과정 중에 받은 학대 경험의 유무를 조사하였을 때, 존속살해 가해자의 61.3%가 학대를 경험한 반면, 비속살해 가해자가 자신의 부모에게 학대를 경험한 비율은 14.3%에 불과하여 약 4배 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만 별도로 분석했을 때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전)배우자나 자녀 대상의 범죄에 비해 (조)부모 대상의 범죄에서 가해자가 신체적 학대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해자의 정신과 진료경험은 (조)부모 대상 범죄에서 68.4%로 가장 높았고, 정신병리 진단 경험은 (조)부모, 자녀 대상 범죄에서 각각 56.7%, 57.1%로 보통살인 범죄자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홍영오 외, 2020). 세부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분석된 연구가 없어 알 수 없으나 존속살해의 주요 원인인 가해자의 정신이상과 피해자로부터의 학대를 비롯한 가정불화는 시대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존속살해 가중처벌 규정

형법 제250조 1항(살인)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항(존속살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를 비교해 보았을 때, 보통살인에 비해 존속살해에 대하여 더욱 무거운 처벌을 내리도록 규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비속이 존속에게 어떠한 범죄행위를 하게 되면 상당한 사회적 비난은 물론 가중된 처벌을 감수해야 함을 의미한다(김진혁, 2013). 반면, 비속살해도 존속살해와 마찬가지로 존·비속 관계에서 발생하는 살인이지만, 존속살해와 달리 가중처벌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일반범죄에 비해 더 가볍게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윤명숙, 김새봄, 2017).

2021년도에 수정된 현행 양형기준에서도 존

속살해 범죄는 가중처벌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다. 형법은 양형위원회의 살인범죄 양형기준에 의거해 5가지 살인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양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때 고려되는 것이 양형인자인데 총 3가지 기준에 의해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다양한 양형인자의 기본 성격을 규명하는가에 따라 행위인자와 행위자/기타인자로 나누고, 행위인자를 더 중하게 고려하게 된다. 두 번째는 책임의 경중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에 따라 가중인자, 감경인자로 나뉜다. 마지막으로, 그 정도에 따라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로 구분되는데, 특별양형인자는 권고 영역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여기서 양형인자 ‘존속인 피해자’는 행위인자, 가중인자, 특별양형인자에 해당한다. 즉, 유사한 사건이라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가 존·비속인 경우에는 그 사정이 어떠한가 중처벌이 내려지며, 혹여 사정을 봐주어 감경이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기본 영역에서 형량이 선고되므로, 다른 경우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가 존속살해를 보다 가중처벌하는 이유는 유교적 전통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존속상해의 위헌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비속의 직계존속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봉건적 가족제도의 유산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윤리의 본질적 구성 부분을 이루고 있는 가치 질서로 바라보았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유교적 사상을 기반으로 전통적 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왔으므로, ‘비속’이라는 지위에 의한 가중처벌의 이유와 그 정도의 타당성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차별적 취급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았다(헌재 2002. 3. 28. 2000헌바53). 즉, 존속살해 가중규정은 보편적 도덕원리인 효에 근거하기 때문에 ‘비속의 패륜

성'에 기하여 더욱 강하게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며(박달현, 2013), 그렇기 때문에 가중규정 폐지 논란은 현대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간주되는 것이다(이철호, 2012).

이렇게 효를 중시하여 비속의 존속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강조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비속살해에 선고되는 형량에서도 찾을 수 있다. 윤명숙과 김새봄(2017)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 재판 과정에서 비속살해는 남은 자녀의 양육 문제, 생활고, 부모의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정상참작하여 감형이 되는 경우가 존속살해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속이 존속을 살해했을 때는 가중규정을 두어 무겁게 처벌하나, 그 반대인 존속이 비속을 살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상참작하여 가볍게 처벌되는 경우가 더욱 비일비재한 것이다.

이러한 가중규정은 존속을 대상으로 한 범 죄는 사회 전체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윤리 의식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본 점과(김진혁, 2013)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한다는 유교적 전통사상이 그 사상적 배경으로 작용하여 정당성이 확보되었으며, 따라서 일반인을 살해한 것보다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법에 반영된 것이다(박남미, 2018). 그러나 앞서 존속살해의 주요 동기를 살펴본 최인섭과 김지선(1995)의 연구에 따르면, 존속살해 동기 중 가해자의 이욕은 불과 7.1%에 불과하였다. 오히려 시대를 막론하고, 존속살해 가해자의 동기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가해자의 정신질환 혹은 부모의 학대였고, 존속살해 가중처벌의 근거가 된 비속의 패륜성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음을 상기하면 다소 괴리가 생긴다.

## 사회적 변화와 존속살해에 대한 인식

존속살해의 가중처벌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왔다. 존속살해를 대명률과 경국대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십악 중 하나로 보아 중형을 부과하였으며, 1905년에 공포된 대한제국 형법대전에도 제498조에 보통살인과 별개로 존속살해 조항을 두었고, 일제강점기에는 조선형사령에 의해 일본 형법이 의용되었는데, 이 당시 일본 형법 제200조에 존속살해 가중규정이 명시되어 있었다(박찬걸, 2010). 그 후 1953년 우리 형법이 제정되면서 제250조 2항에 일본 형법과 같은 내용이 40년간 유지되어 오다가, 1995년 제3차 형법개정 때 '7년 이상의 징역'이 추가되어 현재의 형태로 수정되었다(헌재 2013. 7. 25. 2011헌바267). 같은 해, 일본에서 대부분의 존속살해 판결에서 감경사유가 포함되며, 존속의 유책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가할 만큼의 비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가중처벌 조항을 완전히 폐지한 것과는 사뭇 다른 행보이다.

해당 내용을 입법화할 당시의 학자들은 형법의 적극적인 일반 예방의 관점에서 존속살해를 가중 취급하는 것은 충분한 가치합리적·목적합리적 근거를 가지며(김일수, 2007), 형법을 통해 효를 보호해야 할 법익으로 간주했을 것으로 보인다(조국, 2003). 존속살해 가중규정이 합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요지도 이러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따르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라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치관을 위배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등이므로 가중처벌 규정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다(헌재 2013. 7. 25. 2011 헌바267).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효는 상대적·개인적 가치로 축소되어 자발적으로 행할 것이 권장되는 도덕규범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변화하였다(조상제, 2011). 효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유교적 가치관의 수용 정도가 젊은 세대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예로, 과거에는 자식에게만 효와 같은 특성을 요구하였다면, 현대에는 부모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자격을 요구하는 사회적 기조가 생기면서 존속과 비속의 관계가 마냥 수직적이진 않고, 수평적인 관계로 변화하였다(홍지아, 천혜영, 2011).

실제로, 현재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유교 문화를 부정적으로 여기고 이를 탈피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유교결’과 같은 신조어가 인기 있는 이유는 유교와 가부장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젊은 층의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최은희, 2021), 남북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Juliette Morillot(2016)는 촛불혁명을 주도한 젊은 세대에 대해 유교 권위에 대한 새롭고도 놀라운 혁명을 일으킨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8년도 「한국의 사회동향」 보고서에서 유교적인 문화에 어긋나는 행위에 반대하는 비율은 고령층일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젊은 층에서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보고한 바 있다). 가부장적 질서를 보여주는 예시 중 하나인 성 역할 규범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내의 역할을 가정일 및 남편 내조로 한정하고, 남편의 역할을 가정 밖 경제활동으로 구분짓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은 젊은 층에서 매우 낮게 나타났다. 20대 이하에서 약 6%였지만, 그 비율이 연령층이

올라가면서 점점 증가해 50대는 약 40%, 60대 이상은 약 60%가 찬성하였다. 이 결과는 2020년도에 실시된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2020년도 「한국의 사회동향」 보고서에 의하면,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급격히 변하고 있으며 특히 가족 내 성 역할에 대해 공평함을 지향하는 가치관이 2006년부터 계속해서 증가해 가장 뚜렷한 변화를 보였다. 이는 가사노동은 여성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고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탈피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0년도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연령이 높을수록 가정 내 전형적인 성역할태도에 동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 격차는 매우 컸다.

유교 문화가 지금보다 더욱 강하게 지배하고 있던 시대를 산 기성세대와 달리, 젊은 세대는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에 대해 점점 더 부정적 인식을 가지며, 이를 변화하려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교적 전통에 따라 효를 중시하여 존속 대상 범죄만을 가중처벌하고 있는 현재의 법 제도는 국민 전체에게 공감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범죄유형에 따른 범죄 심각성 평가가 세대 간 전통적 가치관과 근대적 가치관에 의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박철현, 장규원, 정현미, 진수명(1999)의 연구에 따르면, 30대 이하의 연령층의 경우 아동학대, 부정부패, 성추행, 강간에 대해서 더욱 심각한 범죄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40대 이상의 연령층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더욱 관대한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러한 30대 이하 집단과 40대 이상 집단 간 범죄 심각성 판단 차이의 결과는 종단적으로 비교 연구한 박성훈, 김한균, 김영규, 박철현(2014)의 연구

에서도 재현되었다. 다만, 이들의 연구에서는 과거에 비해 약해지기는 하였으나 보통살인보다 존속살해를 여전히 전 연령대에서 심각하게 평가하였기 때문에 존속살해 가중처벌 규정이 국민의 법감정과도 일치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분석 대상에 비속살해가 포함되지 않은 점, 아동학대와 존속폭행의 심각성 판단 수준이 비슷하게 높은 수치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존속살해에만 가중처벌을 내리는 현행법에 채고의 여지가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보았듯 존속살해의 가중처벌은 효라는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에 따라 비속의 패륜성을 더욱 강하게 처벌하고자 함이었다(박달현, 2013). 해당 조항이 제정된 그 당시에는 유교적 영향력이 강하게 남아있어 시민의 법감정과도 일치하며, 가중규정을 둠으로써 좀 더 보호해야 할 법익적 가치로 볼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가치관이 변해감에 따라 존속살해 가중처벌 규정이 대다수 시민의 법감정과 여전히 부합할 것이라 단언하기 어려워졌다.

## 연구 목적

존속살해와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형법 제 250조 2항의 존속살해죄 가중 규정에 대한 위헌 논쟁과 관련되어 법리해석에 초점을 맞춘 법학 연구들이었다. 심리학적 접근 방식으로 실시된 연구는 이훈구(2002)의 ‘이은석 사건’ 피의자의 심리 분석에 초점을 맞춘 사례 연구 뿐이다. 이 사례 연구는 존속살해범인 이은석의 범행에 영향을 준 요인을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전문가들은 아동 학대와 학교 및 군대에서 일어난 왕따 등을 원근요인으로 꼽았고,

부모와의 언쟁 이후 큰 스트레스를 받았던 환경적인 요인을 근접요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존속살해에 대한 현대 시민들의 법감정(즉, 존속살해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판단을 내리는지)이 어떠한지, 이 법감정이 현재의 법조항과 재판 결과에 충분히 공감이 되는지 등에 대한 사회과학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존속살해를 포함한 총 3가지 살인의 유형(존속, 비속, 보통)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이 어떠한지를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때, 박철현 외(1999)의 연구와 박성훈 외(2014)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치관의 대립이 예상되는 30대 이하와 40대 이상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 세대별 사건 판단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30대 이하 집단은 1982년생부터 2000년생까지를 말하는 ‘밀레니얼세대(Wong, Gardiner, Lang, & Coulon, 2008)’로 명명하고, 40대 이상 집단은 일반적으로 40세 이상이 속한다고 여겨지는 ‘기성세대’로 나타낼 것이다. 최종적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교적 가치관과 같은 존속살해 가중처벌 규정을 유지하는 근거가 충분히 타당한가를 탐색하고자 한다.

## 방 법

### 참가자

본 연구는 전국의 20대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진행되었다. 2021년 9월 2일부터 10월 18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되었으며, 총 196명이 응답하였다. 이중 누락된

표 1. 인구통계

		존속 살해	비속 살해	보통 살인	전체
성별	남성	18 (36%)	15 (36%)	17 (34%)	50 (39%)
	여성	23 (29%)	27 (35%)	28 (36%)	78 (61%)
연령	20대	12 (31%)	12 (31%)	15 (38%)	39 (31%)
	30대	10 (36%)	10 (36%)	8 (29%)	28 (22%)
	40대	11 (33%)	12 (36%)	10 (30%)	33 (26%)
	50대	7 (29%)	7 (29%)	10 (42%)	24 (19%)
	60대	1 (25%)	1 (25%)	2 (50%)	4 (3%)
	전체	41 (32%)	42 (33%)	45 (35%)	128

응답과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128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128명의 성별 분포는 남성 50명(39%), 여성 78명(61%)이었으며, 연령별 분포는 20대 39명(31%), 30대 28명(22%), 40대 33명(26%), 50대 24명(19%), 60대 4명(3%)이었다. 시나리오에 따른 구체적인 성별과 연령 분포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주저자 소속 기관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하에 진행되었다(HIRB-2021-059).

#### 연구절차

본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연구에 사용될 시나리오와 문항이 적절하게 제작되고 조작되

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0대 3명, 40~50대 2명을 대상으로 시나리오 및 문항 검토를 진행하였다. 이들의 답변을 통해 시나리오 내용 측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게 하며, 각 사건의 상황이 최대한 유사하게 보일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었다. 또한, 일부 문항이 광범위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을 통해 해당 문항의 표현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참가자 모집을 위하여 대학교 커뮤니티와 인터넷 카페에 온라인 실험 링크를 게시하였고, 추가적으로 지인을 중심으로 그 링크를 배포하였다. 본격적인 실험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연구대상자 설명서와 서면동의서 내용을 삽입하여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실험에 참여하도록 설계하였다. 동의 후에 실험이 진행되면, 응답자는 세 가지 시나리오 유형(존속살해, 비속살해, 보통살인) 중 하나의 시나리오에 무선으로 배정받았다. 시나리오를 읽은 후 응답자는 그 사건에 대해 총 9개의 문항에 응답하였다. 실험이 종료된 이후 참가인원의 15%에게 추첨을 통해 보상을 제공하였다.

####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살인사건 시나리오는 각각 존속살해, 비속살해, 보통살인의 세 종류로 이루어져 있다. 이 시나리오들은 피해자 가해자의 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조건들에서 최대한 유사하게 작성하였다. 존속살해와 비속살해 시나리오에서 아버지는 50대로, 아들은 20대로 조작하였으며, 보통살인 시나리오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모두 30대 남성이며, 친구 사이로 조작하였다. 시나리오는 피해자

가 진 빛을 사정상 같이 갇아 나가던 가해자가 만취한 피해자를 보고 격양된 나머지 말다툼을 벌이게 되고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되는 내용이다.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책임 소재가 있다고 여겨질 수 있고, 가해자에게는 어느 정도의 정상참작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시나리오 전문은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각 시나리오에는 윤리적 요인, 범죄 심각성 요인, 응보적 요인, 책임 요인, 형량 판단, 주의점검문항의 총 9가지 문항이 제시되어 있다.

윤리적 요인은 시나리오 속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일탈적으로 인식되는지를 통해 판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의 문화적 전통에 기초하여 판단할 때, 이 사건은 그 문화적 전통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7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1=전혀 벗어나지 않았다, 7=매우 벗어나 있다).

범죄의 심각성 요인은 시나리오 속 사건 가해자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심각성을 통해 판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각각 “귀하는 A(가해자)를 윤리적으로 비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와 “귀하는 이 사건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7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 1=전혀 심각하지 않다, 7=매우 심각하다).

응보적 요인은 시나리오 속 사건이 정상참작이 가능한가, 고의성이 있는가를 통해 판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각각 “귀하는 A의 상황을 정상참작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와 “귀하는 A에게 살인의 의도(고의)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7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

책임 요인은 시나리오 속 사건의 가해자 피해자 각각에 대한 책임 정도를 통해 판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각각 “귀하는 A에게 사건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와 “귀하는 B(피해자)에게 사건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7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

형량 판단은 시나리오 속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귀하는 A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면 어느 정도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5년 단위로 형량이 구성된 7점 리커트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1=5년 미만, 7=30년 이상).

주의점검문항은 응답자가 시나리오를 제대로 읽고 응답하고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 “위 시나리오 속 A는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각 시나리오 속 A의 지위(B의 아버지, B의 아들, B의 친구)와 ‘아무 관계도 아니다’로 구성된 4가지 답 중 하나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 분석방법

본 연구는 살인유형에 따른 세대별 살인사건 판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탐색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3(살인유형: 존속살해, 비속살해, 보통살인) × 2(세대: 밀레니얼세대, 기성세대) 참가자 간 요인설계를 사용하였다.

사건 판단에 있어서 살인유형의 주효과와 살인유형과 참가자의 세대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존속살해, 비속살해, 보통살인의 세 가지 살인유형에 따른 판

단 차이에 세대라는 조절 변인이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가를 알아보았다. 연구 참가자의 집단별 기술통계와 수준별 기술통계와 문항간 상관을 우선적으로 살펴본 후, 주의점검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종속변인 문항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나온 최종 요인을 대상으로 ANOVA를 실시하였다.

추가적으로, The PROCESS macro for SPSS를 사용하여 살인유형과 사건 판단의 관계에서 세대는 문화적 전통 이탈 정도를 통해 매개된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검증하였다(Preacher & Hayes, 2013).

## 결 과

### 기술통계

세대와 살인유형에 따른 사건 판단의 기술통계량은 집단에 따라 표 2에 제시하였다. 각 문항별 기술통계를 보았을 때, 양극단에 치우

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대별, 살인유형별 판단의 차이는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띠는 것으로 보인다.

### 요인분석

우선 8개의 종속변인 문항의 차원을 축소시키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시행하기 위해 KMO와 Bartlett 검정을 실시하였다. KMO 분석 결과 .76으로 양호하였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는  $\chi^2 = 187.61$  ( $p < .001$ )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한 자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공통요인분석 방법인 주축요인분해법(principal axis factoring)을 사용하여 요인수를 탐색하고 Oblimin 방법을 통해 요인구조를 회전하였다.

스크리 도표에서 나타난 결과와 패턴 행렬(표 3 참조)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8가지 문항 중 문화적 전통 이탈 정도 문항과 피해자 책임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여섯 문항만을 하나의 요인으로 묶고자 하였다.

표 2. 집단별 문항의 평균 및 표준편차 (n=128)

	세대		살인유형		
	밀레니얼	기성	존속살해	비속살해	보통살인
1. 문화적 전통 이탈 정도	4.28 (1.85)	4.72 (1.57)	4.80 (1.75)	4.57 (1.70)	4.13 (1.71)
2. 가해자에 대한 윤리적 비난	5.27 (1.42)	4.64 (1.74)	4.76 (1.67)	5.24 (1.50)	4.91 (1.65)
3. 범죄 심각성	5.78 (.93)	5.66 (1.18)	5.71 (1.08)	5.79 (1.00)	5.67 (1.11)
4. 정상참작	3.85 (1.59)	4.23 (1.80)	4.15 (1.75)	4.24 (1.65)	3.73 (1.68)
5. 고의	3.64 (1.76)	2.93 (1.52)	3.61 (1.77)	2.90 (1.54)	3.40 (1.67)
6. 가해자 책임	5.48 (1.41)	5.15 (1.31)	5.07 (1.66)	5.33 (1.36)	5.53 (1.04)
7. 피해자 책임	5.25 (1.56)	5.30 (1.44)	5.39 (1.36)	5.52 (1.25)	4.93 (1.78)
8. 형량	2.64 (1.69)	2.48 (1.51)	2.51 (1.45)	2.48 (1.60)	2.69 (1.77)

표 3. 최종 문항의 패턴 행렬

문항	요인	
	1	2
1. 문화적 전통 이탈 정도		.57
2. 가해자에 대한 윤리적 비난	.76	
3. 범죄 심각성	.49	
4. 정상참작 (역채점)	.64	
5. 고의	.51	
6. 가해자 책임	.52	
7. 피해자 책임		
8. 형량	.65	

묶여진 문항이 적절하게 묶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내적합치도를 알아보았다. 전체 문항에 대한 Cronbach's  $\alpha$ 는 .62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었다. 6개의 문항을 묶은 하나의 요인에 대한 Cronbach's  $\alpha$ 는 .76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문항의 Cronbach's  $\alpha$ 보다도 높게 나왔다. 각 문항 제거 시 Cronbach's  $\alpha$  또한 모두 .76보다 낮았으므로 요인 내 문항들이 적절하게 묶였음을 알 수 있었다. 1번 문항과 7번 문항은 같은 요인으로 묶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문항 간 상관계수도 .07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문화적 전통 이탈 정도와 피해자 비난은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상이하다고 판단하여 1번과 7번 문항은 단일 요인으로 구분하기로 하였다.<sup>1)</sup> 6개의 문항을 묶인 문항은 가해자 자체 혹은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판단하는 문항들이었기에 가해자에 대한 판단을 하는 요인이라 생각하고 가해자 판단 요인으로 명명하기로 하였다.

1) 종속변인 간 상관분석표: <https://url.kr/9hjf6d>

### 가해자 판단 요인에 대한 일변량 분산분석

가해자 판단 요인에 대하여 일변량 분산분석을 살펴본 결과, 세대에 대한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F(1, 122) = 5.06, p = .03$ ). 밀레니얼세대( $M = 4.49, SD = .12$ )가 기성세대( $M = 4.09, SD = .13$ )보다 가해자에 대해 더 비우호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살인유형의 주효과( $F(2, 122) = .45, p = .64$ )와 세대와 살인유형의 상호작용( $F(2, 122) = 1.59, p = .21$ )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표 4 참조).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나오지는 않았으나, 살인유형에 따라 세대별 판단 차이가 존재하는지 탐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단순 주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존속살해의 경우에 밀레니얼세대( $M = 4.64, SD = .22$ )가 기성세대( $M = 3.80, SD = .23$ )보다 가해자에 대해 비우호적인 판단을 하였다( $p = .01$ ). 기성세대 참가자들은 존속살해( $M = 3.80, SD = .23$ )보다 보통살인( $M = 4.36, SD = .22$ )에서 가해자에 대해 비우호적인 판단을 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p = .08$ ). 살인유형과 세대에 따른 가해자 판단 요인의 차이는 그림 1에 나타내었다.

### 문화적 전통 이탈 정도 요인에 대한 일변량 분산분석

문화적 전통 이탈 정도 요인에 대하여 일변량 분산분석을 수행한 결과, 세대와 살인유형 각각의 주효과( $F(1, 122) = 2.26, p = 1.13$ )( $F(2, 122) = 1.79, p = .17$ ), 세대와 살인유형의 상호작용 효과( $F(2, 122) = .48, p = .62$ )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상호작용효과

표 4. 세대와 살인유형에 따른 가해자 판단 요인의 이원 분산분석 결과

변량원	SS	df	MS	F	$\eta_p^2$
세대	5.18	1	5.18	5.06*	.04
살인유형	.93	2	.47	.45	.01
세대 * 살인유형	3.26	2	1.63	1.59	.03
오차	124.79	122	1.02		
합계	133.69	127			

\*  $p < .05$



그림 1. 살인유형과 세대에 따른 가해자 판단

가 유의하기 나오지 않았으나, 마찬가지로 탐색적 분석의 목적으로 단순주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살인유형에 따른 세대별 문화적 전통 일탈 정도 판단은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살인유형과 세대에 따른 문화적 전통 일탈 정도 요인의 차이는 그림 2에 나타내었다.

피해자 책임 요인에 대한 일변량 분산분석

피해자 책임 요인에 대하여 일변량 분산분석을 수행한 결과, 세대와 살인유형 각각의 주효과( $F(1, 122) = .03, p = .87$ ) ( $F(2, 122) = 1.83, p = .17$ ), 세대와 살인유형의 상호작용효과( $F(2, 122) = .15, p = .86$ )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나오지 않았으나, 마찬가지로 탐색적 분석을 위하여 단순주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살인유형에 따른 세대별 피해자 책임 판



그림 2. 살인유형과 세대에 따른 문화적 전통 일탈 정도



그림 3. 살인유형과 세대에 따른 피해자 책임

단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살인유형과 세대에 따른 피해자 책임 요인의 차이는 그림 3에 나타내었다.

매개된 조절효과 분석

존속살해 가중처벌의 근거가 되는 유교적 가치관(효)이 실제로 사람들이 사건을 판단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알아보고자 매개된 조절효과 분석을 탐색적 분석의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가해자 판단 요인에서 일부 살인유형에 따른 세대별 판단 차이가 있다는 경향성이 나타났기에 혹시 세대와 살인유형의 상호작용 효과가 문화적 전통 이탈 정도 요인에 의해 매개되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추가적인 분석의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Hayes(2013)의 process macro model 8을 통해 매개된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고, 해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평균중심화하여 검증하였다. 결과는 표 5와 그림 4에 제시하였다. 살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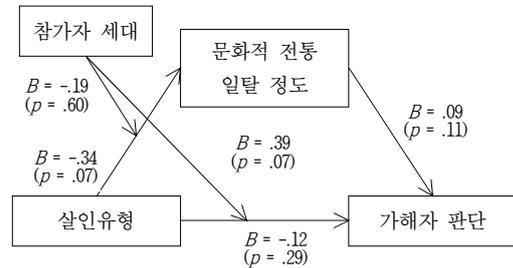


그림 4. 매개된 조절효과 모형

유형에 따라 매개변인인 문화적 전통 이탈 정도 판단이 달라지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B = -.34, t = -1.86, p = .07$ ), 살인유형과 세대의 상호작용이 문화적 전통 이탈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B = -.19, t = -.52, p = .60$ ). 또한, 살인유형에 따른 종속변인인 가해자 판단이 세대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B = .39, t = 1.81, p = .07$ ). 따라서, 문화적 전통 이탈 정도를 매개하여 살인유형이 가해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서 세대의 매개된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표 5. 매개된 조절효과 분석 결과

	매개변인: 문화적 전통 이탈 정도				
	B	SE	t	LLCI	UCLI
살인유형	-.34	.18	-1.86 <sup>†</sup>	-.71	.02
세대	.45	.30	1.49	-.15	1.05
살인유형 * 세대	-.19	.37	-.52	-.93	.54
	종속변인: 가해자 판단				
	B	SE	t	LLCI	UCLI
살인유형	.12	.11	1.06	-1.10	.33
문화적 전통 이탈 정도	.09	.05	1.63	-.02	.19
세대	-.43	.18	-2.42*	-.78	-.08
살인유형 * 세대	.39	.22	1.81 <sup>†</sup>	-.04	.82

<sup>†</sup> p < .10, \* p < .05

유의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살인유형에 따른 참가자 세대별 살인사건 판단 차이를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 존속살해, 비속살해, 보통살인에 대해서 윤리적 요인의 한 문항, 범죄의 심각성 요인의 두 문항, 응보적 요인의 두 문항, 책임 요인의 두 문항, 형량의 한 문항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세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사건 시나리오를 꼼꼼히 읽고 문항에 답했는지를 알기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묻는 주의점검문항의 한 문항을 포함하여 총 9가지 문항으로 설문문을 실시하였다. 이후 분석을 통해 ‘문화적 전통 이탈 정도 요인(윤리적 요인)’, ‘피해자 책임 요인’ 그리고 나머지 문항을 하나로 묶은 ‘가해자 판단 요인’의 총 세 요인을 대상으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해자 판단 요인에서 밀레니얼세대가 기성세대에 비해 가해자에게 비우호적인 판단을 내렸으며, 이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한편 세 종속변인에서 모두 살인유형에 따른 판단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살인’이라는 행위 자체가 이유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쉽게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성 차이 이전에 사람을 살해한다는 행위의 위법성을 우선적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가해자 판단 요인에서 존속살해 가해자에 대한 세대별 판단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밀레니얼세대가 기성세대보다 존속

살해 가해자에 대해 비우호적인 판단을 내렸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교적 가치관이 존속살해 가중처벌의 배경이 되므로 이러한 전통적 가치관이 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밀레니얼세대가 오히려 기성세대보다 존속살해 가해자에 대해 비우호적인 판단을 내린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가정하였다. 첫 번째 가정은 연령 효과이다. Lockwood, Abdurahman, Gabay, Drew, Tamm, Husain, & Apps(2021)은 이기적, 또는 이타적 행위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려는 의지를 측정하였을 때, 젊은 성인에 비해 더 나이가 있는 집단에서 이타적 행동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사회성을 측정하기 위해 5가지 경제 게임(economic game)을 사용한 실험에서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하며, 더 관대해지는 경향이 있음이 나타났다(Matsumoto, Yamagishi, & Kiyonari, 2016). 이 밖에도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연령이 증가할수록 타인에게 더 관대해지고 이타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Cutler, Nitschke, Lamm, & Lockwood, 2021).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고려해볼 때 나이가 많은 집단인 기성세대는 밀레니얼세대에 비해 가해자를 용서하거나 포용하려고 하는 등 비교적 관대한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가정은 검은 양 효과(Black Sheep Effect)이다(Marques, Yzerbyt, & Leyens, 1988). 검은 양 효과는 집단 규범을 벗어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개인이 내집단에 속해 있을 때,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의미한다(서경원, 김혜숙, 2008). 부정적인 한 개인에 의해 자신이 속한 내집단의 이미지나 집단정체성이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

할 때, 집단 내의 사람들은 그 개인에 대해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자신들의 집단 정체성을 보호하려 한다. 존속살해 시나리오의 가해자는 20대 아들, 피해자는 50대 아버지로 제시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밀레니얼세대는 아들인 경우가 많고, 기성세대는 아버지인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존속살해 내에서 밀레니얼세대는 가해자인 아들을 내집단으로 보고, 기성세대는 피해자인 아버지를 내집단으로 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밀레니얼세대의 참가자들은 아버지를 살해한 부정적 행위를 한 20대 가해자가 자신의 세대 집단(밀레니얼세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야기시킬 것으로 예상하여, 기성세대의 참가자들보다 존속살해 가해자에게 더 비우호적인 판단을 내렸을 수 있다.

세 번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해자 판단 요인에서 기성세대는 존속살해 가해자보다 친구 관계에서 발생한 보통살인 가해자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판단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교적 영향 아래에 비교적 강하게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성세대가 패륜을 저지른 존속살해 가해자보다 보통살인 가해자에 대해 더욱 비우호적인 판단을 내린 것은 다소 흥미로운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나온 이유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타인에게 더 관대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 연령 효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2011년 LG경제연구원의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조사 연구에 따르면, 40대와 50대는 가족을 중시하는 경향이 다른 세대보다 강하게 나타났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을 모두 고려하면 보통살인에 비해 가족 내에서 발생한 존속살해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관점을 취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친구일 때보다 아들인 경우에 부모의 마음에서 더욱 측은지심을 가져, 존속살해 가해자를 더 동정하여 비교적 우호적인 판단을 내렸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먼저, 본 연구는 인터넷 설문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의점검문항의 효과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페이지와 설문을 진행하는 페이지를 분리하였다. 20대부터 60대까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본 연구의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설문 도중 페이지를 잠깐 나갔다가 다시 접속하였을 경우 시나리오 페이지가 아닌 설문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 설문을 진행할 수 없어 탈락률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추후에는 사전에 시나리오 페이지로 돌아갈 수 없으니 꼼꼼히 읽어달라는 문구를 추가하거나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더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는, 본 연구는 가해자와 피해자 성별을 남성으로 통일하였다. 존속살해와 비속살해, 보통살인 각각의 가해자와 피해자 성별 비율을 보았을 때, 가해자의 경우 모든 살인유형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고, 피해자의 경우 존속살해에서만 남성보다 여성이 많았다. 피해자의 성별과 판단자의 성별의 영향을 살펴본 황인정(2007)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범죄에 대해 판단할 때, 남성이 범죄에 좀 더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여성은

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더 많은 양형을 부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보다 여성인 경우에 더욱 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별 효과 배제를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일 성별로 구성하여 성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차이를 줄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세 살인유형 모두에서 실제 피해자의 성차는 크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제 존속살해, 비속살해, 보통살인에 대해 판단할 때는 본 연구와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존속살해의 가중처벌 규정의 근거가 되는 유교적 전통이 실제로 각 시나리오를 읽고, 이에 관해 판단을 내릴 때 중요하게 작용하였는가를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더욱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유교적 전통을 본 연구에서 질문한 문항에 더해 개인의 유교적 관념 정도를 알아보는 척도를 추가한 뒤 매개요인으로 설정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의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존속살해를 가중처벌하는 현 법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처음으로 비교한 심리학 연구이다. 지금까지 존속살해에 대해 진행된 연구는 위헌논쟁과 관련된 법학 연구가 주를 이루어졌기 때문에 심리학적 측면에서 존속살해와 비속살해, 보통살인 간의 판단 차이와 세대에 따른 판단 차이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현재 특별양형인자의 가중

요소로 고려되고 있는 ‘존속인 피해자’ 요인에 대해 재고할 필요성을 제안한다. 존속살해 가중처벌은 유교적 전통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비속이 존속을 살해한 그 패륜성에 기인하여 사회적으로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며 이를 가중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범감정과도 부합하는 처벌이라는 것이 요지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 따르면, 존속살해와 비속살해, 보통살인 가해자에 대한 판단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존속살해 내에서 세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가중처벌 규정의 근거가 되는 유교적 전통에 의한 결과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 이유로는 먼저 유교적 요인과 가해자 판단 요인 간의 상관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존속살해 가해자에 대해 사람들이 판단할 때 유교적 전통이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문화적 전통 일탈 정도를 물었고, 그 밖에 살인유형에 대한 판단을 알아보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판단과 피해자 책임을 질문하였다. 이 세 요인 간의 상관을 보았을 때, 문화적 전통 일탈 정도와 가해자에 대한 판단의 상관계수는  $.10(p = .29)$ , 피해자 책임과의 상관계수는  $.08(p = .38)$ 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가해자에 대한 판단과 피해자 책임의 상관계수는  $-.22$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기에  $(p = .01)$  문화적 전통 일탈 정도만이 다른 두 요인과 유의미한 상관을 가지지 않았다. 더불어, 문화적 전통 일탈 정도가 세대와 살인유형의 상호작용이 가해자 판단 사이를 매개하지 않았던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현 법안이 가정하고 있는 유교적 전통이 실제로는 사람들이 그 사건을 바라볼 때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시사된다.

법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며,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통해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 죄에 맞는 정당한 벌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춰 법이 새로 제정되거나, 기존 법이 개정되는 등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존속살해 가중처벌은 꾸준히 위헌성을 두고 논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폐지하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취소되거나 처벌 수위가 낮게 개정되기만 하였다. 살인은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성을 보고 한 쪽은 가중처벌을, 한 쪽은 감경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 특히나 그 기원이 사람들의 사건 판단에 영향을 거의 끼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유교적 전통이라면, 본 연구는 해당 법안이 다시 한 번 논의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참고문헌

- 김성돈 (2013). 형법각론. SKKUP.
- 김일수 (2007). 한국법에 나타난 효도법의 원형-특히 형법을 중심으로. 한국효학회 1(4), 43-54.
- 김준성 (2011). 형법상 존속살해죄에 있어서 효(孝)사상의 적용문제. 법학연구, 21(4), 117-140.
- 김지현 (2007). 고등학생의 대인관계 용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분석 (석사학위, 연세대학교 대학원). RISS
- 김진혁 (2013). 패륜범죄의 원인 및 대응방안. 한국범죄심리연구, 9(2), 49-69.
- 대검찰청 (2021). 2021 범죄분석.
- 박남미 (2018). 존속살해죄와 영아살해죄의 위헌성 검토와 비속살해에 대한 고찰 - 합리적인 양형 방향의 모색 -. 비교형사법연구, 20(2), 61-108.
- 박달현 (2013). 존속살해죄 위헌 논거의 허와 실: 새로운 해석. 저스티스, 139, 105-137.
- 박성훈, 김한균, 김영규, 박철현 (2014).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VIII).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570.
- 박소현 (2014). 법문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유교적 사법전통. 대동문화연구, 87, 359-392.
- 박용철 (2012). 형사법상 존속과 비속의 차별적 취급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20(1), 535-558.
- 박재홍 (2009). 세대명칭과 세대갈등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경제와사회, 81, 10-34.
- LG경제연구원 (2011. 6. 13). 한국 소비자들의 7가지 라이프스타일. Retrieved from <http://www.lgeri.com/report/view.do?idx=17085>
- 박지선, 김정희 (2011).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인식이 가해자 처벌 판단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학연구, 19(2), 77-96.
- 박찬걸 (2010). 존속대상범죄의 가중처벌규정 폐지에 관한 연구: 존속살해죄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1(2), 175-202.
- 박철현, 장규원, 정현미, 진수명 (1999).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 기독교뉴스 (2020. 9. 11). '나일리지'와 아름다운 세상. Retrieved from

- <http://www.kidoknews.net/column/detail.php?id=6332>
- 서경원, 김혜숙 (2008). 집단규범이탈 정도와 집단정체성에 따른 검은 양 효과.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8(1), 238-239.
- 안병훈, 최상섭, 안성호, 하태현, 김선범, 권경희, 김정현 (2008). 정신분열병 환자에서 존속살인의 임상적 특성. 신경정신의학, 47(4), 334-340.
- 양형위원회 (2021). 2021 양형기준
- 여성가족부 (2021). 2020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 윤명숙, 김새봄 (2017). 비속 살해 양형에 대한 비판적 분석.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351-352
- 이승호 (2001). [분야별 논점강좌]형법-존속살해죄와 영아살해죄에서 직계존속 개념의 비교. 고시연구, 28(4), 82-90.
- 이재방 (2017). 살인범죄 양형기준 고찰 - ‘범죄유형화’와 ‘특별양형인자’를 중심으로 -. 홍익법학, 18(4), 227-251.
- 이철호 (2012). 존속살해 범죄와 존속살해죄 가중처벌의 위헌성 검토. 한국경찰학회보, 14(2), 213-240.
- 이훈구 (2002). 존속살해사건의 심리학적 조명.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2(1), 308-314.
- 서울경제 (2019. 4. 29). 돈 때문에...폭력에 못 견뎌...존속살해 작년 60% 급증.  
Retrieved from <https://www.sedaily.com/NewsView/1V11ISDGZQ>
- 임 응 (2012). 형법각론. 법문사.
- 정성국, 이재란, 김진영, 탁기주, 오익준, 명의철 (2014). 한국의 존속살해와 자식살해 분석. 대한법의학회지, 38(2), 66-72.
- 정철호 (2007). 존속살해가중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독사회과학논총, 17(2), 307-324.
- 머니투데이 (2020. 5. 7). ‘존속 살해’ 미국의 7배...韓 가족이 흔들린다.  
Retrieved from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50708372683623>
- 조국 (2003). [발언] ‘존속살해죄’는 패륜아들의 범죄인가?. 당대비평, 129-139.
- 조상제 (2001). 현행 존속살해가중의 문제점. 형사법연구, 16, 179-184
- 주현경 (2015). 형벌가중구성요건 착오에 대한 형법 제15조 제1항 적용방법. 법학연구, 26(3), 145-180.
- 쿠키뉴스 (2021. 5. 31). “나도 어쩔 수 없는 유교절” 자조하는 MZ세대.  
Retrieved from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5280189>
- 최인섭, 김지선 (1995). 존속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163
- 최종고 (1997). 한국에서의 유교와 법. 한국법제연구원, 12, 130-157.
- 통계개발원 (2008). 한국의 사회동향 2008.
- 통계개발원 (2020). 한국의 사회동향 2020.
- 하지환 (2016). 존속살해죄 특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가족제도와 형법 제정 경위를 중심으로 -. 법학논집, 21(1), 223-255.
- 형법 제259조 제2항 (2002년 3월 28일).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detcInfoP>
- 형법 제250조 제2항 위헌소원 (2013년 7월 2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detcInfoP>

- 형법개정연구회 (2009). 형사법개정연구(IV) 형법각칙 개정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675
- 홍영오, 김빛나, 손지선 (2019). 살인범죄의 실태와 유형별 특성: 가족살인범죄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543.
- 홍지아, 천혜영 (2011). 존속살인 사건 보도기사의 비판적 담론분석. 현상과 인식 35(4), 269-299.
- 황인정 (2007). 범죄 피해자와 범죄 판단자의 성별이 양형판단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2), 107-121.
- Carlsmith, K. M. (2006). The roles of retribution and utility in determining punishment.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2, 437-451.
- Cutler, J., Nitschke, J. P., Lamm, C. & Lockwood P. L. (2021). Older adults across the globe exhibit increased prosocial behavior but also greater in-group preferences. *Nat Aging* 1, 880-888.
- Juliette Morillot. (2016. 12. 12). Corée du Sud la jeunesse veut destituer le confucianisme, *Asialyst*. Retrieved from <https://asialyst.com/fr/2016/12/12/coree-du-sud-jeunesse-veut-destituer-confucianisme/>
- Lockwood, P. L., Abdurahman, A., Gabay, A. S., Drew, D., Tamm, M., Husain, M., & Apps, M. A. J. (2021). Aging Increases Prosocial Motivation for Effort. *Psychological Science*, 32(5), 668-681.
- Matsumoto Y, Yamagishi T, Li Y, Kiyonari T. (2016). Prosocial Behavior Increases with Age across Five Economic Games. *PLoS ONE* 11(7), e0158671.
- Wong. M., Gardiner. E., Lang. W., & Coulon. L. (2008). Generational differences in personality and motivation: do they exist and what are the implications for the workplace?.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23(8), 878-890.
- 1 차원고접수 : 2022. 06. 29.  
심사통과접수 : 2022. 07. 19.  
최종원고접수 : 2022. 07. 25.

## Differences in the Judgment of Generation Based on Types of Murder

Ho-young Shin

Jungwon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Hallym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difference in judgment of murder cases by participants' generation according to the type of murder. 196 adults in their 20s and older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the scenarios of parricide, filicide, and murder, then responded to the judgment(ex. judgment of the perpetrator, degree of deviation from social norms, and judgment of victim responsibility). Finally, 128 responses were used in the analysi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main effect of the murder type and the interaction effect of the generation and the murder type were not shown in all dependent variables. However, the difference between generation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judgment of the perpetrator (e.g., perpetrator blame, perpetrator responsibility, intentional crime, etc.), indicating that millennials made unfavorable judgments to the perpetrator. Especially, in the case of parricide, it was found that millennials made unfavorable judgments to perpetrators than older generations. Also, it was found that the participants of the older generation tended to make unfavorable judgments toward the perpetrator of murder rather than the perpetrator of parricide. Finally,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proposed the need to reconsider the 'victim of survivors' factor, which is considered as a weighing of an offense for special sentencing factors.

*Key words* : parricide, filicide, murder, confucian culture, the judgment of generation

## 부 록

### 1. 존속살해 시나리오

20대 후반의 남성 A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었다. A의 아버지 B는 회사를 다니다가 5년 전에 개인 사업을 준비하면서 퇴사를 하고, 사업 자금을 준비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는데, 이때 아들 A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였다. 사업이 잘 나가던 중에 어머니 C가 말렸음에도 아버지 B가 무리한 투자를 강행하였는데, 그 투자가 실패하면서 아버지 B의 개인사업 경영상태가 악화되었고, 그로 인한 빚이 늘어나 결국에는 이자 면제조차 버거워져 하루하루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었다. 상황이 점점 안 좋아 지면서 아들 A는 학교가 끝나면 하루에 2~3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하루에 3시간도 자지 못하는 생활을 반복하다가, 결국 휴학을 신청하였다. A를 포함한 온 가족이 빚을 갚기 위해 일에 매달렸는데, A의 경우는 아버지 B와 함께 낮에는 일당이 높은 건설 현장을 돌면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기 시작했고, A는 별개로 주 4회 밤에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병행하였다. 그러나 A의 가족의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여유가 없음에도 휴학 기간 만료는 점점 다가와 복학을 하지 않으면 제적되어 퇴학을 당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A가 늦은 밤에 일을 끝내고 지친 상태로 귀가하였는데 아버지 B가 술에 완전히 취한 모습을 보고 감정이 격해져 B를 향해 수위 높은 폭언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만히 듣기만 하던 B 또한, 감정이 격해지면서 둘 간에 다툼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A는 주변에 있던 둔기를 사용하여 아버지 B의 머리를 내려쳤고, 그 자리에서 B는 사망하였다.

이후 법정에서 A는 살해의도는 없었으며, 그저 그날따라 술에 취해 있는 B를 보고 자신의 현재 처지에 대한 서러움이 확 올라오면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 2. 비속살해 시나리오

50대 남성 A는 자영업자로, 아내와 20대 아들 B와 함께 지내고 있었다. A의 아들 B는 회사를 다니다가 5년 전에 개인 사업을 준비하면서 퇴사를 하고, 사업 자금을 준비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는데, 이때 아버지 A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였다. 사업이 잘 나가던 중에 어머니 C가 말렸음에도 아들 B가 무리한 투자를 강행하였는데, 그 투자가 실패하면서 아들 B의 개인사업 경영상태가 악화되었고, 그로 인한 빚이 늘어나 결국에는 이자 면제조차 버거워져 하루하루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었다. 상황이 점점 안 좋아 지면서 아버지 A는 가게 영업을 끝나면 하루에 2~3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하루에 3시간도 자지 못하는 생활을 반복하다가, 결국 가게는 휴업을 하였다. A를 포함한 온 가족이 빚을 갚기 위해 일에 매달렸는데, A의 경우는 아들 B와 함께 낮에는 일당이 높은 건설 현장을 돌면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기 시작했고, A는 별개로 주 4회

밤에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병행하였다. 그러나 A의 가족의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가게를 다시 열지 않으면 폐업을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A가 늦은 밤에 일을 끝내고 지친 상태로 귀가하였는데 아들 B가 술에 완전히 취한 모습을 보고 감정이 격해져 B를 향해 수위 높은 폭언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만히 듣기만 하던 B 또한, 감정이 격해지면서 둘 간에 다툼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A는 주변에 있던 둔기를 사용하여 아들 B의 머리를 내려쳤고, 그 자리에서 B는 사망하였다.

이후 법정에서 A는 살해의도는 없었으며, 그저 그날따라 술에 취해 있는 B를 보고 자신의 현재 처지에 대한 서러움이 확 올라오면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 3. 보통살인 시나리오

30대 남성 A는 자영업자로, 학창 시절부터 인연을 이어온 20년 지기 친구 B(남성)와 같은 아파트에서 룸메이트로 함께 지내고 있었다. B는 회사를 다니다가 5년 전에 개인 사업을 준비하면서 퇴사를 하고, 사업 자금을 준비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는데, 이때 A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였다. 사업이 잘 나가던 중에 주변 지인들이 말렸음에도 B가 무리한 투자를 강행하였는데, 그 투자가 실패하면서 B의 개인사업 경영상태가 악화되었고, 그로 인한 빚이 늘어나 결국에는 이자면제조차 버거워져 하루하루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었다. 상황이 점점 안 좋아 지면서 A는 가게 영업이 끝나면 하루에 2~3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하루에 3시간도 자지 못하는 생활을 반복하다가, 결국 가게는 휴업을 하였다. A는 B와 함께 낮에는 일당이 높은 건설 현장을 돌면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기 시작했고, A는 별개로 주 4회 밤에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병행하였다. 그러나 A의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가게를 다시 열지 않으면 폐업을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A가 늦은 밤에 일을 끝내고 지친 상태로 귀가하였는데 B가 술에 완전히 취한 모습을 보고 감정이 격해져 B를 향해 수위 높은 폭언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만히 듣기만 하던 B 또한, 감정이 격해지면서 둘 간에 다툼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A는 주변에 있던 둔기를 사용하여 B의 머리를 내려쳤고, 그 자리에서 B는 사망하였다.

이후 법정에서 A는 살해의도는 없었으며, 그저 그날따라 술에 취해 있는 B를 보고 자신의 현재 처지에 대한 서러움이 확 올라오면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했다고 진술했다.